
제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1956년11월26일(단기4289년)(월) 상오10시25분

의사일정

1. 제2차회의록통과
 2. 보고사항
 3. 시정감사보고
 4. 토석채취허가취소시정에대한청원서처리에관한건
-

부의된안건

1. 제2차회의록통과 ... 1面
 2. 보고사항 ... 2面
 3. 시정감사보고 ... 6面
 4. 토석채취허가취소시정에대한청원서처리에관한건 ... 56面
-

○의장 김진용; 재석27의원 출석으로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25분 개의)

제2차 회의록 낭독.....

1. 제2차회의록통과

(간사장 전차회의록낭독)

지금 낭독한 제2차 회의록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이 회의록은 그대로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종수 김재식 두분이 올시다.

다음 보고사항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의장」 하는이 있음)

2. 보고사항

○이원옥 의원; 어저께 영등포에서 기자단 주최로 시의원 여섯사람과 관내의 기관장 기타 유지를 모아가지고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들은데 대해서 여기에서 보고해드릴까 생각합니다.

여러의원 각위 각각 구내에 이런 실정이 있거나 없을까 해서 들은대로 보고해드릴까 하는것입니다.

그 자리에 동장 학교장 또한 유지가 모여서 교육문제 서울시에서 하고있는 행정문제 또는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각동장이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작년오월에 자치법 정신을 살려가지고 동장을 선출했습니다. 많은 현재 동장이 취급하고있는 모든 실정을.....

사무실정을 본다면 시골 저 한구석에 이장이 면장의 심부름하는 것처럼 밖에는 안되고 있으니 시의원 여러분은 과연 그런 실정을 알고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3개월 동안 시의회에 나가서 무슨일을 했습니까? 하는 것을 얘기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제 자신은 무엇이라고 확답을 못했습니다.

우선 작년에 동장을 선출할적에 얘기는 시당국에서 읍장대우니 면장대우니 이렇게 했는데 그당시에 생각하기에는 시골 면정도로 사무를 이관해가지고 일반국민이 복리를 받을 수 있는 사무를 취급하게 되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현실정은 종전만도 못한 불편을 모두 가지고있고 현재도 불편한것을 느끼고있습니다.

하니 우선 호적문제 기류계 문제 또는 세공민문제에 대한 부과 징수문제 이런 것을 속히 추진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읍

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우리 시내에…… 전
번의 회의시에 대체로 알었습니다 만은 학교사정이 국민학교
사정이 모두 어렵습니다 만은 특히 영등포에 있어 가지고는 교
실수가 많이 부족이 되고 또한 현재 구로 국민학교는 3년전에 시
에서 인가해가지고 학교로 되었지만 집도 남의 소유이고 광
장도 남의 소유이고 학교시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소도
없어서 동네사람들이 쓰는 변소에 가서 학생들이 대소변을 보
고 우물은 동네에 나가서 물을 얻어먹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시당국에서는 과거 무엇을 했으며 시의원 여러분은
그러한 사정을 알고있느냐 이런말씀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다 아시다싶이 서울공업고등학교라고 하면 일제시대에 동양
에서도 아마 둘째 가라면 서러워하는 이러한 학교였었는데
현재 서울공업고등학교에 가면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
습니다. 졸업장만 타가지고 왔지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습니
다.

이 실업학교에 대해서 시설문제를 당신네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역시 물었습니다.

또한 그다음에 사회문제라고 해가지고서 부인회장이라든지
일반유지가 얘기하기를 현재 학생들의 풍기가 대단히 문란한
데 교육국으로서는 도저히 등한시하고있다. 이것을 어떻게할
방침인가 이런 얘기를 또 하거든요.

또한 부인회장이 ○기하기를 전쟁미망인이 영등포구에만도
전후 오만명이 있는데 전번에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하는 형
편을 본다면 모두 일반 돈있는 사람만 들어가게 되었었지 돈
없는 전쟁미망인은 집 한칸 얻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에서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규모를 조그마케 하더라도 많이건축을 해서 그러한 불우한 사람에게다가 주택을 줄수없느냐 이런 요청을 들었습니다.

또한 어떤 유지가 말하기를 현재 서울시내에 어떠한 동 또는 어떠한 반 이런 소위 사무소라고 하는 여기에다 그냥 자유당 간판을 걸어놓고 있다 말씀이에요 이런 동사무소에 자유당 간판을 없애달라는 이런 말씀을 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영등포는 일제시대부터 가장 문제가 되는 제방안에 주택과 모든 공장시설이 피여있는데 홍수가 나면은 물이 빠져나갈데가 없어서 매년 천여호가 침수되어서 그것이 한번뿐만 아니라 일년에 두서너차례를 당하는 현실인데 가장급한문제 그 양수기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잘 아시다싶이 영등포구에서 이 구청부터 극장까지의 도로를 빨리 시설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흑석동에도 상수도를 빨리 시설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 제가 들은데로 이 자리에서 보고의 말씀을 들이는 바 이올시다.

○의장 김진용; 또 보고사항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이 있음)

○이행득 의원; 24일날 고아 결연식에 우리 의회에서 사과 열케짜을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증하는데불초와운영위원장두사람이24일날 전달했습니다. 전달했드니 경찰국장이 시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인사를 못하고 이 자리에서 감사한 의사를 표시해서 돌아가시거든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 전달한 결과와 아울러 경찰국장께서 감사한 의사를 표명했다는 것을 보고해 올리는 바입니다.

○의장 김진용; 그밖에 보고사항의 말씀이 계십니까?

(「의장」 하는이 있음)

○장을순 의원; 오늘 말씀을 안들일려고 합니다 만은 본의원의 생각한바를 말씀들일려고 합니다.

이 개회시간이 법적으로 열시부터 한시까지 시간이 정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흘째입니다 만은 30분이나 거부느저가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은 본의원이 당선되기 전에 이 지금의 국회를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도 비난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시간을 의례히 30분이나 40분 또는 성원미달해서 유회 등등 이러한 폐단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의회에도 당설기관은 아닐지라도 이미 법적으로 시간이 제한 되어있고 따라서 중대한 의안 심의하는데 있어서 좀더 시간을 엄수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시간을 절약해야 될것입니다.

이렇게 30분씩 느저진다고 하면은 보통 의례히 그렇게 되리라는 관습을 가질 우려가 있습니다.

단연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불초 이 사람 자신도 주의하겠습니다 만은 여러분도 좀더 시간의 관념을 가지고 시간을 엄수하도록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하나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장은 간사 또는 서기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전말과 출석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출석의원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의사진행에 볼것같으면 인원 몇명이라는 이 정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장 여기에 매일 나오는 의원도 있을것이고 안나오는 의원도 있을것입니다. 이것을 어디까지나 한계를 명확히 의장께서는 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만일 추후 어느 의원이 몇일 안나왔다든가 나왔다든가 이런 문제가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점을 여기서 제가 성안으로 지어서 말씀해도 좋습니다. 만은 제 의견으로만 말씀들이고 들어 가겠습니다.

○의장 김진용; 지금 강을순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고사항은 아닙니다. 만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정에 있는일은 규정대로 실시하겠고 지금 말씀하신 말씀과 같이 출석하신 의원은 그대로 어느의원이 출석했다고 하고 출석 안한분은 안한분대로 보고해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은 없으시지요?

일로서 끝났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의해서 오늘은 먼저 사회보건 분과위원회의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 시정감사보고

○사회보건위원장 홍성유; 사회보건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시사회국관하전반

감사기일

단기4289년10월30일

단기4289년11월12일

14일간(단일요일은제외)

감사반 이반으로편성

반장 홍성유

제1반 홍성유 박승목 김상목

제2반 문기옥 이원옥 최인호

담당반

제1반 시사회과 주택과 부녀과

종로구청 중구청 성북구청 성동구청

용산구청 영등포시립병원 마약진료소

제2반 위생과 위생시험소 의약과 4개소전당포

시민병원 보건병원 자혜병원 동대문구청

마포구청 서대문구청 영등포구청

사회국소관감사상황

현행 서울특별시 160만에 달하는 시민에 대한 사회보건행정을 종합하건데 지방자치 적법정신에 입각하여 항상시민과 고락을 같이하는 말단행정을 담당한 동장 우는 구청장에 이양되어 기자치권을 확대함으로서 시민의 의사가 창달되어 시정에 반영되는 동시 민주자치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위임사무 우는 고유사무를 시장이 취급함이 기인되어 시장이 집권제도화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민주정치행정 원리를 역행하는 반면에 실지과약을 못한채 탁상에서 청취적 견지에서 형식에 불과한 공공사무집행이 허다한 실정인데 이를 약술하면 여좌함

1. 구호실시상황에관한건

본건에 관하여는 실시를 답사하여 완전히 실패과악한 연후

에 구호행정을 실시하여야만이 됨에도 불구하고 탁상에서 출원에 의한 사정으로 집행한데 불과한 구호사무가 허다하다.

1 유니셉 분란배정 상황을 보면 수도중심지인 종로구에 위치한 학교에는 대부분이 부유층의 자녀가 수업함에도 불구하고 「변두리」 동대문구같은데에서는 순세공민의 자녀들을 수업하는 학교보다 해종로교에다가 요구호아동수를 더 많이 사정배급하는 실정임으로 이를 조속히 실태를 파악하는 동시 실지와 부합되는 제도를 실시함을 촉구하는바이며 기실례를 들면 여좌함

4개월배정표

종로구 27,200LBS

동대문구 12,800LBS

2 후생시설에 있어서는 기이전화로 인하여 부모형제를 이별하고 의지할곳 없이 노상에서 방황하며 한분두분의 동정으로서 ○○히 연명하는 전재고아들을 수용하는 소재종로구 사직동에 위치한 시립중앙보육원의 실황을 보면 11월7일현재 남344명 여74명 계418명에 달하는데 체력을 연마할수있는 운동장조차 없음에 대한 타계책을 강구한 나머지 운크라기관을 통하여 중앙의 알시을 어 더 신축자재를 수배받은 시로서는 건축예산면까지 수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목재를 공지에 다 방치하여 대부분 우계에 부패되어 가고있는 현실인데 차에 대한 주무사회국으로서는 너무나 무책임적인 소치라고 인정되는 바이다.

3 시산하에 난민정착 사업단체가 9월20일현재 39개단체 인바 차에 대한 구호물자를 적절히 배정하여야만이 됨에도 불구하고 기이등록수속절차를 완료하고 주택을 완축입주한 단체에다가 우선적으로 구호미를 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 배정치않고 반면에 등록수속 절차만이 완료하고 주택조차
착공도 하지않은 단체가 구호양곡을 선배한 사실이 허다하다.

기실례를 보면 동대문구전농제2동이재민정착 사업동조회
는 2개월전에 입주하였으나 상금미수하였고 답십리 이재민정
착사업 상조회에는 2차에 공하여 수배한 사실에 비추어 공공
사무를 정실화하였다는것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음으로 금
후여사한 처사를 시정하여야 한다 4 난민정착사업주택건
축상황의견

본건에 관하여서는 9월20일현재 등록수속필 단체39개단
체중 기이22개 단체에다가 세대당목재850파운드 「세멘트」
7대반 양정2상식 배정한 사실이 유한데 성북구호혜농원 마포
구원제자영회 영등포구대풍자생원 영등포구대방동소재 대방
동이재민정착사업 상조회등 4개단체는 주택건축착공조차 하
지않을뿐만 아니라 특히 영등포구대방동에 위치한 대방동이
재민정착사업상조회는 건축대지조차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자
재를 배여한 시당국으로서는 의당책임소재를 분명할것은 물
론이거니와 즉시실시를 답사하여 여사한 유명난민단체에 대
하여서는 자재를 회수함과 동시 해산시킴이 타당지사라고 사
료한다.

2. 위생방역 청소에 관한건

1 위생업태허가의견

본건에 관하여서는 실지를 파악하고있는 구청장에게 이양
할수있는 청량음료수 조미료 제과업등 제허가사무를 시장이
취급하고 있으며 기허가건수에 약99%는 재작년(87)년도에
허가교부하고 기대장에는 형식적으로 영업체상호및 대표자정
도일뿐 이에대한공장 위생보건상검찰사항이 전무할뿐만 아니
라 종사원조차 하인인지 부지상태로 방임하고 있는것임

2 약사법위반처리의견

거10일9일 소재 동대문구청량리동 청량약국을 경영하는 신설동 거주전모는 대점케하는 무면허자인 박홍숙이가임의약 제사행위를 감행하여감기약을조제한 사실이유하며 약제사 전 모에 대하여동11월1일부터동30일까지일개월간영업정지처분을 가한것으로공문서상으로 되어있으나 여전히 개업을 계속하고 있음

이것이 어디까지나 정실에 사로잡혀서 탁상의업행정에서 불과한 사실이 증명하고도 나뉘이 있음으로 좀더 성의있는 사무를 집행함을 절실히 요청될뿐만 아니라 실지 답사행정을 하여야 한다.

3 의약과소속병원관계

병원소속예산액

.....
(참조)

병원소속예산액

(뒤에 실음)
.....

계 456,788,200환

이상제병원소요 경비는 제급료를 제외한 약90%이상이 약 품구입, 약료기구, 연료비, 소모품비, 수선비로 지출되었음

가 영등포 시립병원은 신설된 것인바 환자수용수는 타 시민병원에 비하여 무료환자가 전무하다싶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목대가 상당한 액면에 달하는 실정인바 차장작구 입방법에 있어서는 공고경쟁입찰제로 실시한 것으로 증빙서류가 비치되어있는 소재청량리 신탄조합 조석영으로부터 거8 월23일 장작50평(대금5십만원)을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

나 이를 실시 답사한바 該조석영은 경쟁입찰한 사실이 전무하며 다만 작년부터 일회에 약5책내지 10책정도매각하여 현재에 지할 다름이라고 칭하는 것으로보아 장작구입에 있어서는 공문서위조는 물론 상당한 부정이 내포되어 있을것으로 크게 우려되는바 앞으로 여사한 사건의 재발을 미연방지에 전력을 다할것이며 책임자에 대하여 책임추궁하여야 할것이다.

나 시립병원에 대한 인사행정의견

본건의 관하여서는 현시립 각병원실황을 보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가장불가피한 관념에서 중대한 보건의 사명을 담당케하는 의사또는 간호원등 태반이 임시등용의무에 임하여 있을뿐만 아니라 특히 영등포병원같은데는 엄연히 기구상에 간호원16명을 정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규간호원은 단1인도 없이 전부 임시간호원으로 하여금 의료에 임하게함은 필연적으로 기임무에 대한 책임감이 박약케 되는 기결과가 의료에 미치는 지장이 불소할것으로 사유되는바 크게 우려됨으로 가능한 시일내에 인사행정을 조정하여 의료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것을 절실히 요청되는 바이다.

다 망우리 묘지수호에 실황을 보며는 묘지간수하기보다 공무원의 본분을 이탈하는 동시 직권을 남용한 나머지 ○순한 노동자의 노력을 상품으로 이용하여 자기의 수지균형을 자행한 사실허다하여 부근주민의 비난이 자자한데 기사실은 여좌하다.

소속 시위생과(망우리묘지간수)

황중열

우자는 6·25전란전후를 통하여 7년간 소재망우리 묘지간수로서 근무하여 현재에 지함을 기화로서

(가) 거 4월부터 매장하는 상주로 부터 사역케되는 인부임을 매인당 1천환식 받아가지고 기인부에게는 8백환식 지급하고 여2백환을 착복한 사실

(나) 매장시소요되는 묘에 앞이는 데 (자초) 1매당 상주로 부터 6환식 받아가지고 인부에게는 2환식지급하고 잔여금지부를 착취한 사실

(다) 자기의 비행을 은폐하는 술책으로서 동묘지인근 노동자들에게 구속력을 가하여 취로치 못하게 하는 반면에 타처 노동자들로 하여금 사역할뿐더러 소위 시위생과의 월동 연료를 공급하여야 한다는 명목하에 이동원의 51명에 대하여 나무 「한동」 식 거출한 사실등등 유함으로 이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바이다.

3. 주택행정의건

88년도 소재 청량리 「홍능」 에다가 건축한 부흥주택배정에 있어서는 중앙으로부터 입주자격자로 하여금 신청요강에 엄연히 구청장이 발행하는 무가옥증명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모과장개인이 발행하는 무가옥증명으로서 소재 서울 특별시동대문구청량리거주 이인행에게 배정하였는데 이것이 필연적으로 정실에 흘러서 무자격자임을 시인하면서도 여사한 부정주택행정을 감행한것이며 금후에 반성을 촉구한다.

4. 군경원호상황의건

현행국방과 치안에 임하여 불행히도 희생된 군경및동유가족에게 대한 원호비로서 시전역에 공하여 징수하고 있는데 기실황을 보면는 행정구역 단위각구청에 임시서기를 7명내지 11명을 두고 매인당월9천환내지1만5천환식 지불하고 징수액에 대한 할로는 동분회1할구지회5할5분 시지부2할5분 중앙본부에 1할식 경비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하는 기자체가 다부

분에 인건비에 지불되고 실지원호사업비로서는 극소액에 불과한 현실로 사료되든바 이를 좀더 효과적방향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서는 연구와 심사속고를 철저히 요청되는 바이다.

특히 마포지회에서는 10월말현재 총수입액7십8만1천2백환(과년도분12만환포함) 인건비지출에 12만2천8백5십환(송인봉외6명에대한인건비)

시지부납부액 30만환

이상수지면을 볼때 결국은 40만1천환출처가 전무한데 이것은 필연코 사무착오로 사료된다만은 여사한 제도로서는 비합리적인 사업이라고 지적함이 할수없다.

(「의장」 하는이 있음)

○이원옥 의원; 몇마디 첨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 특별시에서 지금 경영하는 사업체에 중앙보육원이라고 하는것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훌륭한 사업이고 하지만 현실정을 보니 극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고아를 갖다가 시에서 보육하는 취지로 갖다가 넣었으면 그아동으로 하여금 발전향상이 있게해야 할텐데 그냥 두어가지고 아무 향상발전이 전혀 없다고 그와같이 생각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훌륭한 계획을 하고 있는줄 압니다 만은 거기에 가보니까 「운크라」에서 준 원조물자를 그대로 싸두고 밑에 있는것은 다 썩는 형편이고 또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썩게 두고 그대로 계획이 된것같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유지도 교외에 많이 있으니 거기에 천막이라든지 이런것을 처가지고 아동들로 하여금 무슨 취미를 가지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마약중독

자 치료소라는 곳을 가보니까 역시 훌륭한 사업이지만 그 반면에 암암리에 마약을 밀매하는 장소가 많이 있다는 것이니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런 밀매장소를 취체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시립병원이 서울에도 많이 있습니다 마는 특히 영등포시립병원을 가보면 어느 정도 시설은 되어있으나 실지로 구민이 혜택을 받는 점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립병원이 라면 영리가 목적이 아니고 구호사업이라고 볼수있는데 이것은 그런게 아니라 돈이 없으면 도대체 들어갈 도리가 없어요.

극빈자는 들어갈 도리가 없어요 하니 모쪼록 시설을 많이 하여 입원실을 많이 만들어서 구민이 실제로 혜택을 받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시청내에 위생시험실이 있는데 그것이과연있는것인지없는것인지서울시민은 잘 알수없는 형편이에요. 하니 이것을 우리 시민의 복리에 맡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옥 의원; 지금 이선생께서 보충 말씀이 있었습니다 만은 시당국의 인사행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만 시의 위생과장으로 계신분은 직책상 대단히 중대한 것인데도 그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닌분이 그자리에 앉아서 160만의 위생을 좌우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가가 아니라도 잘 담당하실 분도 계시지 모르나 보통상식으로는 상상치 못할 일이에요. 전문가라야만 위생을 적합하도록 시행할줄 압니다.

그 실례를 보면 의학과에 소속경비가 4억5천여만원 이리한 막대한 경비를 들임에도 불구하고 위생시험소가 있다 하드라

도 시민이 아는지 모르는지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지도하시는 분의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또 우리 시민에게 일반적으로 영향 받는것은 무엇이나 하면 5억의 경비를 드려서 위생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인건비라는 것은 불과23할에 불과하고 그 나머지는 약품구입이라든지 기계구입인데 그 실정을 보고드리면 가령 갑이라는 약품회사가…… 사람이 물품을 납품할적에는 을이라는 사람의 명칭까지 두가지 서류가 다 있어요. 조사결과 두사람인데 입찰을 할적에 을이 백만원이라 갑은 백십만 환쯤 쓴단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을에게 낙찰을 시키고 그다음에는 을은 백십만 환을 쓰고 갑은 백만환을 쓰면 그실정이 어떠냐 하면 현시세에 적어도 45할이 초과한것으로 낙찰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던 그반수이상인 중간에서 횡류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심지어 이런사정이 있어요 종로, 모상점에 가서 너희 상점에서 이런 약품을 납품을 시켰느냐?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너희 상점으로 되어있는것을 책임을 누가 질테냐. 그것은 저더러 물을게 아니라 그 해당병원에 가서 물어주시요 우리는 전연 납품한 일이 없습니다. 만일 그런 이름이 있다면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니까 중간에 「뿌로카」가 있다고 그래요 갑이 돌아댱가면서 을의 이름을 써가면서 하는것을 당국에서는 모르고 있다는것은 언어도단이에요. 그래가지고 5억의 반만 잡더라도 2억5천만환이 중간에서 유용된다는 것이니 차라리 그것이 학교 후원회 후생비명칭을 둔다든지 적당하게 해서 지불하면 좋지않을까 이런 실정으로 중간에서 막대한 돈이 유용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또 하나는 음식점을 허가하는데 위생과에서 하지않으면 안 될 사항인데 그렇게 하지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대통령 명령으로 연전에 경찰국으로 넘겨서 해라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에요. 이것은 단지 당국에 성의가 없기때문이라고 자인합니다. 또 미용사 이발사의 시험제도가 있는데 어떤사람은 자격이 없는데도 합격이 되고…… 권력 혹은 금력에 의해서 합격시키고 자격이 넉넉한 사람은 합격을 시키지않는다는 것이에요. 차라리 이런다면 이제도를 없애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비용이 수천만원인데 이것을 드러가면서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실례를 들면 거반에 시행한 이발사시험에서 보면 의당히 합격할 사람이 합격치 못하고 합격되지 못할 사람이 합격이 되어 있어요. 그 성명까지 압니다 마는 번호는 35번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사바사바가 있을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시험관의 의사여하에 맥길것이로서 그 제도는 기술에 가서 50 「퍼센트」 를 준다 물론 이것은 좋아요 학술에 가서 30 「퍼-세르」 를 준다. 또 구술에 20 「퍼-센트」 이래서 백 「퍼-센트」 인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기술과 학술에 가서는 과정낙제라는 것을 인정할수 있어요 또 그렇다면 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구술을 20 「퍼-센트」 잡아 가지고 여기에 낙제가 있다 말씀이에요. 병어리라면 재론할 여지가 없지만 15환 20 환 소리는 다할수 있을것인데 60점을 합격점으로 잡었는데 58점으로 낙제를 시켰다 말이에요. 2점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 이발사라는 것은 변호사가 아닌이상 인사정도는 할수있을 것이요 요전에 보니까 이발사시험에 대해서 차라리 금력이라든지 권력에 의해서 한다면 시험제도를 폐지하라는 것을 대서특서해서 난것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 당국에서 이

런점을 고려하셔서 시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까 위원장께서 공동묘지 말씀을 했는데 실지로 가보니까 거기에 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 20년간 거기에 있다는 것이요 어느것이고 한 사람이 오래 잡고 있으면 여러가지 폐단이 있는 것이니 인사관계를 말씀하는 것은 죄송하나 그 황모라는 사람을 될수있으면 경질해주시기 바라며 또 제가 실지에 가서 황모보고 문서를 달라고 하니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소모품이든지 부속품에 대한 대장이 없느냐고 하니 그것을 당신이 불러면 저뒤에 가서 쌓노은것을 보시오 그러니 시의회에서 가서 얘기할적에 그럴적에는 그 구민의 허대는 말할수 없을것입니다.

여기 갑의 묘 하나가 10년 20년쯤되면 때가 벗어지는데 그것을 새로 할려면 한장에 육환씩 받아먹는데요 이러한 악질을 거기에 둔다는것은 좋지않은 점이니 시당국에서는 특히 이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용; 사회국소관 시정감사 보고는 이로서 끝났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이 사회를 교대함)

○부의장 이행득; 다음 재무국소관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홍순우의원께서 보고해 드리고 세목으로 들어가서 박수형 신사회 이종구 이갑수의원이 각각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순우의원이 보고하겠습니다.

○홍순우 의원; 10월22일 본회의에서 결의해 가지고 시정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재무소관은 2반으로 나눠가지고 예산집행관계 또 하나는 세무관계를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관계에 있어서는 박수형 임종순 이갑수 세 분이 하고 세무행정관계에 이종구 신사회 김수길 제의원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내용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푸 린트와 마찬가지로 감사내역은 일반회계및 지방세결손처분에 관한건 시경감독하에 운영되는 청소및이국 작업에관한건 초 등교육비 특별회계 2억5천만환에 대한 이자관계 공익전당포 관계 시유재산처리에 관한건 광고세및 교통세관계 시립병원 관계 경전회사와 서울특별시간의 청산교통세 수도권 동력세 등에 관한건 부과관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감사반 이 감사하게된중에 여러방면으로해당한것은 다른 위원회로 넘기고 여기해당한것만 감사했습니다.

우선 세부적인 것은 다른의원이 말씀하시고 제가 총체적으 로 말씀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집행은 금년도 총액195억환의 세입세출을 일반회 계와 특별회계로 받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수입면에 있어서는 6,957,651,499환이라고 하는것이 시현되었고 지출면에 있 어서는 7,718,767,632환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과지출이 되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상 업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지출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집행에 있어서는 지출로 19% 수입에는 32%에 불과한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서울특별시의 재정 의 가장 불안전한 상태에 있다는것을 지적안할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하겠는데 재원의 최대의 것은 지방세입니다.

세금징수 총액이 2십5억여만환으로 되어 있는데 10억여환 이 결손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초등교육비특별회계에

서 결손처분액이 4억2천여만원이 되고 동정비 특별회계에서 1천7백만원에서 결손처분액이 14억이나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들이면 구청별로 다가 세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 시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들이겠는데 막대한 토지를 가령 예를들면 조선신학원유지 재단이사장진정률씨와 재단법인 국민학원이사장 조환규씨 또 장기영씨와 남북건설자재주식회사 취체역회장 송우철씨에게 막대한 시유지를 대부해줘 가지고 그목적은 처음 계약할때에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들었지만 그 방도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이것을 볼때에 공연히 시유지가 이용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안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머냐할것 같으면 세무행정에서 부과결정하는데 있어서 공정을 기하지 못하고 편중해 있고 과중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부유평권층인 손원일씨가 33등급 벽경동씨 77등급 남송학씨 46등급 이런 모든면을 나타내고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대한것을 집행면과예산면과세무면에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대로 되있지 않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는 것은 막연히 수자의 나열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가공적예산을 편성하고 또한 가공적인 예산편성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좋지못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아니할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예산편성에 있어서나 집행에 있어서는 국민의 재정형편을 생각안해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수자의 나열만이 제일이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국민의 담세능력을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하지않으면 안되겠다는것을 재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무행정에서 160만시민이 살고 있고 더군다나 다른도시에 비해가지고 서울은 백9십5억…… 아마 내년

중으로 오를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런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것같으면 세원을 육성해야하고 세원의 조사를 잘해야 한다는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원의육성과 또한 조사에 대해서 그릇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시민의원성이 제기되고 있고 또 정실관계 기술부족관계가 합침으로써 더욱 납세정신이 희박해 진다고 생각안할수 없습니다. 납세의무를 잘 실행한다고 하는 영국 미국 같은데서도 부과에 불공평하고 하면 납부성적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방면에 있어서 공정을 기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안된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그리고 여기 세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른 의원께 밀고 신년도의 예산편성이나 집행면에 있어서 일대혁신을 하지않으면 안될 단계에 처해 있다고 본의원은 단언하여 마지않습니다. 간단하나마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행득; 다음 예산집행에 대해서 박수형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수형 의원; 재정은 그단체의 활동의 상태이며 또한 표현이라고 경제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이유는 하나의 단체가 건전하게 잘 운영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척도는 그 예산내지는 결산에 대한 집행여하에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상식화되어 있는 문제인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여기 예산집행면에 대한 감사의 소속을 말씀들인다 하면 여태까지 88년도 예산집행상황을 본다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못했고 또 그내용이 다만 기계적이었고 또한 이것을 운영하는 고급관리제공들의 성의력이

없이 운전수에 지나지 못하는 예산집행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의 가공적이며 형식에 지나지 못하는 재정이라고 세인이 다 비난하고 있는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들이면 일반회계및 특별회계와 지방세금결손처분건에 대해서 말씀들이면 88년도의 그 총액은 195억1천4백여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져서 일반회계및 11개특별회계로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9월말일현재 집행상황은 69억환의 수입을 봤고 지출면에 77억환이라는 초과지출입니다.

어떻게 해서 초과액이 약8억8백만원이란 수자가 나와있는가?

이것은 상업은행에서 장기 또는 일시차입을 얻어서 초등학교 특별회계면에서 2억5천만원 주택특별회계 447,848,487환 다음 전당포 제도관리청등합하여 111,000,000환등입니다.

따라서 기집행률은 지출면이 불과39%이고 수입면은 그야말로 불과32%에 해당되는 형편이며 민국의 수도인 서울특별시의 예산이란 하나의 가공적이며 수자만 나열한 체면예산에 불과하며 건전한 재정을 지향하고 또한 실천하여야 할수도서울시의 재정상태가 이모양이고 보면 또한 시행정이 여하히 시행되었는가도 또한 명백히 추측할수 있는것입니다.

특히 재무당국은 88년도세입예산결산예정액을재산수입 8,772,500환에 대하여 3,963,064환 사용료및수수료 800,439,800환에 대하여 346,442,486환이고 시세 5,289,203,600환에 대하여 4,110,791,850환이면 약8할을 예정하고 소위국고보조1,374,945,500환에 대하여 587,054,517환이면 결국 3할집행도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다음과년도수입797,961,700환중에서 452,190,107환이고

잡수입936,748,300환에대하여 391,283,841환이고 기타 수입 조목을 합하면 일반회계세입액9,549,120,200환중 약 6,100,000,000환 정도로 결산한다면 불과5할강의 집행예정인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이상이 수입상태에 대하여 지출면은 여하한가

단기4288년7월1일부터 단기4290년2월말일까지 최대한의 결산예정액이 6,100,000환인데 지출면에서는 89년9월말일현재로 기히 4,095,306,799환을 지출을 집행하였으며 89년10월 11월 12월 90년1월 2월까지 5개월간에 2,100,000,000환으로 지출면에서 충당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이나 여기 또한 본감사원으로서 의문을 가지게 되는바는 토목영선면에 있어서 10월말일까지의 총공사건수와 금액은 일반회계공사건수 241건에 대하여 1,995,597,206환이고 수도특별회계83건에 대하여 585,216,818환 초등교육비50건에 대하여 550,137,790환 중고등교육비56건에 대하여 485,505,088환 초급농대교육비 2,180,000환 시공관특별회계 13건에 대하여 69,377,224환 중앙토지구역정리비 3건에 대하여6,957,000환 공익전당포비 2건에 대하여 1,755,000환 합계 449건에 대하여 3,696,926,126환입니다.

또한 건설국당국은 11월내로 국민학교공사 10건내외및일반공사 10건내외 동대문 문화재보수공사등을 합하면 적어도 3억환내 의 자금가 또 전월의회결의로서 통과된 47개 구역단위 골목길 수리건도 일부분이라도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위도금액중잔액우는 미지불금도 900,000,000환에 불과하고 신규공사등 합하면 토목영선비면에 아즉도 145억환이나 지불하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아직남는 약20억과 기타소수소액인 각급특별회계 수입면을 종합하면 엄밀히 시재정상상태를

검토하면 예산집행의 정확을 기하기 난한바 있습니다.

특히 88년도중에서 일시차입한 은행채무도 10억환중에서 5억환은 이자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할것입니다. 이와같이 채무확정액 우는 앞으로 쓸돈과 앞으로 수입될 세입세출을 비교검토하면 역시 88년도 예산결산도 결국 하나의 방법에 지내는 즉 다시 말하면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도저히 건전재정이라는 문구조차 적용할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기원인은 어디 있는가?

첫째

세무행정의 재정법규정을 적용하여 거대한 액수를 결손처분한데서 있으며 차로 인하여 시재정에 일대영향력을 가져왔으며 사회에 대한 지방세무행정의 맹점을 여실히 나타낸 것입니다. 88년도 예산중 재원의 최대기간은 지방세인데 일반회사에서 89년9월말일까지 세금징수액총계 2,581,278,783환에 대하여 1,018,570,934환이고 초등교육 특별회계에서 교육세결손처분액 427,807,547.54전이고 수도특별회계 결손처분액 15,342,062.00전이고 동정비특별 회계에서 17,217,631환 합계결손처분액은 1,478,938,174.56전입니다.

본건집행당국은 납세자의 행방불명우는 과산등을 이유로 하고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수시결손처분을 단행함에 대하여도 기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차등 이유를 명백히 하기까지의 세무당국의 노력이 절대부족하였으며 엄연히 살고있는 자를 행방불명으로 하고 사업체가 엄연히 운영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하는 예가 허다함을 부인하지 못할 현실정에 조감하여 치밀하고도 엄정한 재심사가 요청되는 바입니다.

기결손처분한 개괄적인 면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참조)

결손처분내역

(뒤에 실음)
.....

2. 시경감독 에 운영되는 청소및 분노작업에관한건

본건은 단기4288년도 최종예산액352,875,400환인데 단기 4289년10월30일까지 총집행액이 227,902,870환입니다. 따라서 본건은 진개부분문과 분노의 2개부분으로 구별하는데 분노부분은 추력70대를 시내9개 경찰서 단위로 6대내지7대를 배당하고 경찰서는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분노철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이나 시민은 인부가 분노철거를 할때마다 매 통 30환씩 지불하고 있으며 시민의 보편적인 여론과 우리내 상식과 또한 경험으로 보아서 본건은 9개경찰서와 체결한 대행한 업자와 중간이득이 지나치게 과도함은 시민의 사심없는 비난의 대상이 되는 만큼 금후89년도 예산편성시는 진개및분노양부분을 일정한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키든가 불연이면 지자체로서 자체의 예산을 편성함이 절대로 가하다고 보며 현금과 여히 시민의 분노철거 ○○○○로 내고 또 일반세입에서 근3억환내외의 청소비를 지출함에 있어서는 단연코 시정하여야 할것입니다.

단기4288년도 청소비영달일람표

.....
(참조)

단기4288년도청소비영달일람표

(뒤에 실음)
.....

3. 초등교육비 특별회계중 2억5천만원 일시차입에 대한 이자관계

단기 4288년도 본예산및 추가예산을 합하여 최종예산합계가 2,621,792,736환인데 단기4289년9월말일까지 집행액은 1,073,784,406환입니다.

차세입의 내용은 교육세로서 2,001,214,600환이고 국고보조로서 611,306,606환이고 기타로서 편성하였든 것이 교육세징수 부진을 이유로서

초등교육영선비로서 총당코져 단기4288년11월14일자로 교육국에서는 교육세징수입으로 반환키로하고 한국상업은행에서 2억5천만원을 차입하였든 것은 차일시 차입금에 대한 지불기일은 단기 4289년6월말일 이였으나 재무당국은 주무인 학무국과는 일언반구의 상의도 없이 단기4289년8월부터5월30일간에 1억9천만원을 일방적으로 유용하고 우금까지 지불치 못하고 따라서 학무당국은 자금난으로서 학교영선공사 부진으로 2,3부제로 인한 시내 학부형들의 불편이약 말로 형언키 어려운 차제에 시민의 여론을 말살하고 일반회계에 유용된 체로 금일까지 반환치도 않고 내무부 재무부 한국은행 상업은행에는 국민학교 영선자재인수 등이라는 허위적인 이유로서 상부관청및 은행을 속여가면서 금일에 지하여 시민이 납부한 교육세로서 부당한이자까지도 무제한지불하면서 무질서한 행정의 빈곤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며 엄연히 독립회계로서 되어있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혼동하여 사무체계로서 도저히 용납될수 없는 처단을 감행하면서도 주머니 돈이 쌈지돈이고 쌈지돈이 주머니돈이라는 주먹구구식의 언사로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이러한 처사는 시권위유지상 방임할수 없는것입니다.

국회에서도 같이 자유당의원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대단히 문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포구청장으로 가신 조일환씨가 주머니 돈이 쌈지돈이고 쌈지돈이 주머니돈이 라는 즉 다시 말하면 같은 시청안에서 일하는 사람 즉 재무국장이나 또는 회계과에서 돈을 받아서 있다는 것이 무슨 잘못이 되느냐 이런 말썸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경제학상이나 재정법 운영상으로 보아서 도저히 이것은 이렇게 할수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5,6년동안을 역대 시장을 모시고 회계과장을 했다는 것을 볼때에 역시 의심하지 않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재무국에서 초등교육비유용관계로 공사실시 후 지불 마감기일이 지나도록 상환조치를 안해주므로 아무런 가치없이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것으로 이는 도저히 둘수가 없다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어요 어디든지 제3자로 부터 유용했으면은 마땅히 이자를 물어야 될것이에요.

이자를 무는데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무느냐 재무국장이 역시 같은 청내에서 좀 유용해 왔었다고하거니와 이것은 차입이 아니라 임시유용이라고 말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자치법에 대한 그 근거도 알아야 되고 법적 근거에 있어서 행위를 할수 있는 이러한 태도를 갖추지 못한 점이 된다는 것을 명백히 나타난 것입니다.

만약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구에 88년도 결산 승인서가 우리 의회에 올라왔을 적에는 다른 분과위원회는 모르겠읍니다 마는 제견지에서는 절대로 이 예산교서 승인하여 줄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연구를 하여서 앞

으로 시당국에 차후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참고 삼아 이 2억5천만원에 대한 이자미불액은 3백6만 2천5백환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 공익전당포관계

재정면으로 보아 4288년도 최종예산액을 194,880,000,으로 책정하고 4289년9월말일까지 수입면으로 보면 14,743,539 이고 지출면으로 10,840,730,이며 시로서의 보조액면 총계 53,100,000,인데 이는역시 상업은행에서 장기차입한 것이다 기중에서 3,100,000은 4개전당포 시설비로 썼고 50,000,000 만은 우선 4개전당포에 대량균형적으로 배당하여 운영케 하고 있다.

따라서 본부 공익전당포를 실시감사한바 직원은 3명으로써 직무에 당하고 있으며 9시출동 시간내에 단한명도 출석치 않고 9시반경에야 모다 출동하는 형편이고 현금잔고를 조사하니 장부에는 1,431,459 이고 은행잔고에는 1,321,927이여서 차액 109,532 이나 되는것을 추궁하니 지금 주임이 해임되었는데 신임주임이 오시거든 충당하겠다는 무책임한 언사를하였다.

다음 업적을 살펴보니 4288년도7월1일부터 4289년11월10일까지 총집행건수는 118671건이고 대출총액수는 46,524,200이다. 그리고 회수건수는 12,361건에 대하여 회수액수는 47,893,500이다. 그리고 미수건수는 2,391건에 대하여 미회수액수는 11,253,900이다.

그리고 4289년11월1일부터 10일까지는 기중229건에 대하여 904,500 잔여채고분은 2,161건에 미회수액은 10,349,400 이고 다음 이자는 월2분으로서 1만원에 대하여3백환이고 특히 유의할 점은 4288년7월1일부터 89년 11월10일까지 유질

건수 220건이고 차에 대하여 회수액수는 873,300 인데 기중
월금 맞이자가 초과되어 본인에게 돌려보내 달라고 시사회국
시설계에 보낸 금액이 34건에 대하여 일금17,006이다. 그리
고 서부공익전당포도 약현금47,000이 유용되었고 개설이래
유질공매건수 446건에 대하여 본인에게 돌리는 건수 413건
에 대하여 일금27,822,000이다.

차에 대한 감사원으로서의 건의

1 각전당포는 직원의 사물○기관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되
는 것이다.

2 특히 반환금에 대하여서는 본청자체가 실지로 당사자에
게 반환하여야 할것이다.

3 다음 유질공매처분에 대하여서도 전당포직원과 친한 상
인간에 소위 내용유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도 속히 시정하
고 공명정대한 방법을 택하여 시민의 의문이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4 본청에서는 예산영달을 과감하게 하여 자금난에 허덕이
는 각급전당포의 사정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것이다.

5. 시유재산처리에관한건

현재 서울특별시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총면적3,626,825
평인바 기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대지 ○86,735,평18

(2) 전 242,439평

(3) 답 42,246평

(4) 임야 2,326,878평

(5) 잡야 19,103평

(6) 분묘지 248,354평

(7) 社寺 1,215평

(8) 池沼 132평

(9) 도로 4,470평

하천 19,887평

제방 4,159평

수도지목 98,134평

수도노천 32,990평

계 3,626,825평이다.

기중 공적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여한 것인데 기내역은 여좌하다.

1 건축기지 122,623평

2 경작지 609,554평

3 조림용 15,200평

4 기타 7,819평

총계 263,193평인바 대여요금은 평당1금 500-300-30-120-20-등으로 구분하여 단기4288년도최중예산액은 8,772,500 중 집행액은 불과 89년10월말일까지 3,363,630이다.

기내용을 검토하면 중요사항 다음과 같다.

1. 조선신학원 유지재단이사장 진정률씨 명의로 대여○ 단기4289년2월20일부 조선신학원 교사신축대지용으로 금호동산7의13번지소재 17정보중 10정보를 평당년4환이란 근소한 대여료로 대여를 받고 기후 1년이 경과하도록 교사신축의 대한 하등의 조치가 취하여 있지않는 현실인바 차는 시세입 징수를 위한 불하처분을 취함이 이 가하다고 사료함.

2. 재단법인 국민학원이사장 조목규씨명의로 대여조

단기4289년6월10일부 계약체결한 조목규씨에게 임야 28,205평을 학교부지용으로 대부한바있으나 본건 역시 전건

과여히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함

3. 장기영씨명의로대여조

용산구한남동산8의10번지 소재 시유임야 10정4반보를 조림목적으로 단기4288년12월 일부로 장기영씨는 시장에게 임대허가 신청을 하였든바 시당국에서 단기4288년12월2일부로 해임야는 시가 직접 조림지로 선정하여 실시계획중이라는 구실로 정식 기각통지를 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후 돌연이도 단기4289년3월27일부 전김태선시장과 장씨간에 계약이 성립되었다 하며 더욱이 무료로서 오정보를 대부하게 되었다함은 이해하기 곤란할뿐 부시라 현지를 답사하건대 차임야의 조림에 대한 하등조치가 취하지 않고있는 현실정임으로 차계약을 즉시취소하고 시조림상정지로 선정하든가 불연이면 후생주택 기타 시당국의 유효적절한 용지에 사용함이면 가 하다고 사료함

4. 남북건설자재주식회사 취체역회장 송우범 씨에게 대여한조

본용지는 원래의 목적이 공무원및전재민의 후생주택 건축용지에 사용하여야 할 동대문구용두동 소재 시유지 25,000평을 단기 4287년10월일 송우범씨는 대부신청을 시당국에 제출하였든바 단기4288년8월16일부 좌기조건하에 시유지 8,498평을 평당년대부료 40환으로 결정하고 차를 승인대부하였다는바 이실정을 瞥見컨데 원래의 계약조건을 무시하고 임대자송씨는 독단적인 처사를 하고있는 현실로서 차를 취소금지하는 동시에 과거의 승인조건에 응하도록 해임대인에게 통고하여 긴급대책을 청구할것을 건의함.

기

계약위반사항

제11조 준공건물에 대입주자 선정을 상정 시장의 협의를 수할것

(주) 입주자선정과 신청자 수리를 남북건설회사에서 단독 취급하고 시당국에는 보고정도임

제12조 준공건물의 분양가격및분양방법에 대하여는 별도 시장의 승인을 받을것

(주) 분양가격과 방법을 역시 남북건설주식회사 자의로 하여 시와 사회부에 보고하고 있는 현실임

이상과여히 위약을 감행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차건물이 당초목적인 공무원및전재민의 주택에 상응한 성질의 건축보다는 대부분이 상류부유층에 적응한 가옥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후생주택 건축의 원래의 목적이아니라 영리적 사업에 치중하였음이 역력히 나타나는 현실로 희생적인 시유지 공급에 위배된다고 사료함

6. 광고세및교통세관계

(1) 광고세관계

감사원의 의견으로서는 광범한 분야에 걸쳐서 광고행위로서 소득되는 취득액에 대하여서는 기상대가 여하한 권력기관이 건을 막론하고 법의 정하는 바에의하여 공평히 징수되어야 하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세내용을 보면 극소부분의 시내16개처의 극장의 대하여서만 4288년도 최종예산액 1,884,130으로하고 89년9월말일까지 수입면에 1,296,560을 나타내고 미수 587,570 으로되어 차항징수성적은 양호였으나 금후는 각종목 일간신문사 주간신문 잡지에지하여 광범위한 분야에 있어서 차항목세금 징수에 많은 수자를 시현할것을 철저히 요청한다.

(2) 교통세관계

법근

4287,6,14내무부영제39호(4개

지방세법시행규칙제91조

본세금의 부과및징수는 법제51조규칙에 의하여 시내통행 중인 전차 궤차 승합자동차 택시에 의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위탁하고 있는바 해업자들의 신고서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세액부과면에서 보아 중요불가결의 기초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각업자의 신고(별지참조)내역도 애매하거니와 또한 반면에 차신고서를 제쳐놓고 임원의 자의로 사정을 진행하여 업자간의 세액부과의 불균등 불만을 초래하고 있음은 민은관을 속이고 관은민을 불신한다는 격의 현실정임은 심히 유감지사라 아니할수 없으며 앞으로 동세부과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최기사항을 유의개선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기

1 부과관계

1 각업자로 하여금 정확하고 진실성있는 신고서를 제출할수있도록 철저한 지도계몽을 요한다.

2 본세액 사정에 있어 빠스는 2할 택시는 3할범위내에서 편리를 도모한다는 비율기준의 여부는 불문하고 업자간 동일한 비율로 사정부과할것은 물론이고 현재 각자동차 수리공장의 발행하는 운휴증명서에 의한 막연한 부과보다 구체적인 기운휴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부과에 공정을 기할것

3 각업자의 자동차사용 신청서와 차이있는 부과를 진행할 시는 기에대한 상당한 증거서류를 구비하여야 할것이며 추산적인 부과를 회피할것

.....

(참조)

교통세부과비율표, 교통세신고표

(뒤에 실음)

.....

7. 시립병원관계

본병원은 단기4281년12월1일 창립이래 여러차례 명칭을 변경하여 오다가 4284년12월1일정식으로 시립보건병원으로 발족하여 4289년10월31일현재 퇴원환자는 793명이고

래치료환자수 연17,093명이라는 수자를 내어 무산아동보건에 진일보하였음은 경하할 바이다.

연이나 본원직원 53명과 분원14명중 지방공무원이 불과 123명으로서 잔여인원은 모다 임시공무원인 것이며 공무원으로서의 국가의 봉임할려는 충성심이 희소한 것으로서 기원인은 대우가 좋지못한 이유도 유하나 일방임시직원 이라는 불안스러운 위치에 있어 직무수행상 책임관념이 적음으로 말미아마서 귀중한 무산아동의 생명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는 중대사업을 능률적으로 향상식힘에 큰애로가 있는것을 여실히 노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정운영면으로 볼때 단기4288년도 최종예산액은 70,550,400 인대 89년9월말일현재 실지집행액은 39,545,370 이다.

차영달금액의 태반은 시사회과에서 현품영달하는 양곡외에 시장에서 89년도10월말일까지 총량 5,472을 구입하고 기액수 1,053 800이고 부식비조로 일금3,663,255 이고 잔여분은 ○료기타 일반소비품을 구입하는데 소비되었음

특히 금후 운영방침을 재고할 점은 각종구입품가격이 당시 가격보다 3,4할이 고가라는데 괄목할 점이 유하며 기폐단의

원인은 본청에서 서면영달을 하는 관계로 본청과의 연락 입찰 사항상소비가 많은데서 이러한 수자상소비가 많으니 금후는 일정한 소액수는 현금전도금을 주어서 시가에 해당되는 가격으로 구입하면 시재정상만은 혜택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88년7월1일부터 89년10월말일까지 총주미는 2만5백2십4 인데 소아환자 일인당 매○3식식 4합을 주고 부식은 주로 된장국과 소량의육어류로 충당된다.

환자들의 영양상태는 대단히 좋은 편이었다.

(박수형 계속)

8경전회사와 서울특별시간의 미청산 교통세 수도료 동력세 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경전회사와 서울특별시간의 미청산 교통세 수도료 동력세 등의 관한건

본건은 단기4284년도부터 단기4289년9월말까지 시가 경전에 미납한 동력료가 6억4천6백9십2만3천7백십환이고 경전이시에 미납한 교통세가 5억5천9백5십8만6천4백7십7환이고 또 15만평에 대한 선로사용료가 3백만환 그리고 전주점용료가 2만5천평에 대하여 5백만환소개도로 2만3천평에 대하여 4천6백만환 계5천4백만환 시가 경전에 납부하여야 할 차액은 3천3백3십3만7천2백4십환이 된다.

다음 건설국수도과가 연합군급수료 미수입액이 또한 단기4289년9월말일까지 4억1천2백3십9만5천5백4십1환이며 이러한 등등의 문제도 하루속히 해결하여야 할것이며 무제한방임하여두는 행정의 빈곤을 여실히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건전한 재정확립에 최대의 암이되는 것으로서 조속히 해결하는 것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이상이 올시다.

○부의장 이행득; 다음 세무관계를 신사회의원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신사회 의원; 본의원은 재무국소관 보고서에 누락된 것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하 서울특별시장은 관선시장에 의해서 시정을 실시해 왔는데 개중에는 다분히 찬양할바도 있겠지만 시민을 무시하고 시정을 해 내려왔기 때문에 시민의 생활을 날이 갈수록 암담했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국민 전체가 3대의무의 하나인 즉 납세의 의무인 것입니다. 물론 시민이나 국민들이 납세의 의무가 박약한 점도 있겠지만 세무관리들의 세무행정이 박약하여 부패했다는 것이고 또한 부과에 공정을 기하지 못한 점이 많이 있는것입니다.

연이나 특권자 부유층에는 터무니 없이 경한 부과를 해서 불만불평이 허다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는 각기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에 이기봉씨가 호별세등급은 44등 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로 되어 있는것입니다.

또 중구에 강일매씨로 말하면 종업원을 수백명 거느리고 조선방직주식회사의 사장이신데 이분의 호별세등급은 57등에 불과하여 87년도 제2기분의 일부인 15만8천8십6환을 납부하였고 용산구의 남송학씨는 거대한 실업가인데도 불구하고 46등에 달하는데 87년도 일기분 10만6천6백2십환중 5만환을 납부하고 그후 몇해분은 전연 체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구에 거주하는 백두진씨는 이나라 5거부의 하나라고 하는데 겨우 40등에 불과하며 검세원들이 가면 조사에 응하지않고 또한 조사에 응하지않는데 우리 약자같으면 인정과세라도 했

을텐데 아마도 거부층의 한분이기 때문에 인정과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0등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또 마포구에 함두영씨는 대한건설주식회사의 사장이시고 소위 부흥주택 관계로서 6천만원을 용자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거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호별세등급은 32등에 불과하니 시민 전체가 불평불만이 있는 동시에 징수사무에 대단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느낀것은 세무관리들이 약자에게는 마음대로 인정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거부층이나 특권계층자에게는 마음대로 인정과세도 못하고 도리혀 경한 부과를 하고 있으니 저는 생각하는 바가 우리 세무관리들에게 특권세부관리 라는 것으로 명칭해야만이 공정과세가 되지 않을까 이런것을 생각한바가 있었읍니다.

그리고 중구에 고재봉씨의 세금 사항을 조사했는데 등급수는 32등이고 이분은 기일을 열흘앞두고 자진납부를했습니다. 그래서 고시장을 고시장이 아니고 과연 명시장이라고 이런말을 한적도 있습니다 마는 이와같이 특권계층에 처해있는 분들이 자진해서 세금을 납부한다면 서울시의 살림은 원활히 풍부한 살림을 잘 할수있다고 느낄바도 있습니다.

이상 몇가지를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부의장 이행득; 그러면 점심시간이 되어서 나머지는 오후에 하기로 하고 2시반까지 오전회의는 이로서 마치겠습니다.

(12시 45분 정회)

(14시 40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행득; 재석24명으로서 오후개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중구의원 보고해 주세요.

○이중구 의원; 대개 본의원이 본 결과 거기에 소감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부과행정을 불적에 현재 경제 상태라든지 또는 여러가지 동태를 불적에 일세기에 두뒤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10년전 세법을 가지고 그대로 지금도 행정을 하고 부과상태를 볼 지경이면 물론 어떠한 때는 거기에 대한 효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본의원이 본 견지에 의하면 유감천만이라고 아니할수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 지금 현 하 화폐발행고는 보고서를 쓸적에는 6백7십8억이라는 돈을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볼 지경이면 7백2억이라는 발행고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날이 경제상태는 비참하기가 짝이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나 물론 국가재정정책의 졸렬에 원인도 있겠습니다 마는 간접적으로 서울시 세무행정에 결함이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과행정을 통괄적으로 불적에 10년전의 재정 기준을 떠나지 못하고 지금으로 앞서서 그대로 하고있는데 모순점이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부과에 최고액이 77등인데 그것을 불적에 77등에대한 세액이얼마냐천3백여만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불적에 아무리 경제상태가 정상적으로 간다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모순점이 있을텐데 오늘날 경제상태는 10년전 화폐발행고나 지금의 발행고를 불적에 적어도 10배의 차이는 있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30등 이하의 평균 세액이 1천백9십7억418전 30등 이상 평균 1천4백5십4만4백96전 특등이 평균 31만4천5백5십1환11전이 올시다. 그러면 이것은 부과에는 30등이하에 다 치중했다고 봅니다. 현 과세는 배세액이라는 것이 있어 가

지고 그 권한내에서 하기때문에 자연적 과세가 되지 못하고 이러한 불공평이 났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하 서울시세무과의 과세행정을 불적에 조사계라는 무엇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몇이나 전원이 세명밖에 없습니다. 셋을 가지고 어떻게 서울시 세무행정을 좌우할수 있겠는가 그것은 꿈에도 상상치 못할 일이에요. 또 여기에 봉급자의 생활기준을 불적에 한국은행 조사월보에 의해서 보면 평균수입이 5만8천5백십4환 또 그밖에 5만2천7백8십2환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현하 부과행정을 불적에 호준조사라는 것이 있는데 가정 형편을 보아서 부과하는 것인데 그러면 가정세원의 공정을 획득하겠는가 양성세원도 획득치 못한 상태에 있어서 음성세원을 획득한다는 것은 꿈에 꽃구경을 하는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과거에 잘못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장래에 어떠한 세무행정을 했으면 서울시의 재정이 윤택한 재정이 생기며 어떻게 하며 공평을 기할수 있는가 하는것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선요망사항

1. 세무과 조사계 대폭증원에 대한건

현조사계는 3인의 인원으로서는 세무행정에 무용지물밖에 아니되니 강력한 운영으로 세원조사에 주력을 둘것.

단 법인체조사에 능숙한 인원으로 최소한 35인이 필요함
현하 기업체는 전부법인체로 변화하여 합법적탈세과정을 이행하므로 기자료수집이 중요목적임.

2. 지방재무당국과 횡적연락으로 자원이동과 세원이동등 상호자○통보의 방법이 결여되었음.

3. 호별세검세부에 기본조사 내용이 없고 일세기전 「주먹

구구식」으로 수자의 나열도 없이 등급만 기장하여 ○정하니 금후로 여차한 방법을 시정할것.

4. 세원조사에 절대필요한 한국은행 외국부의환과등 세관 정착장 화물수송처 외국물자불하장 내무부건설국 농림 재무 부등등 관계자원 조사를 철저히하여 대기업의 세원조사를 여행할사.

5. 배세액의 할당은 각구청에 할당치 말고 참된 생생한 부과행정을 이행하되 다액납세자의 세원조사를 철저히 하고 중점을 고액 납세자에 둘것.

6. 세령제12조의 해석을 광의해석으로 현하경제상태에 적응한해석하에서 부과방법을 시정함을 요함.

7. 세령제12조를 현경제상태에 적응키 위하여 최고등급을 150등으로 개정하는 동시에 50등 이상에서 대폭누진율(부과고부률)로 개정할것을 요망.

8. 세시행령 제6조를 전적으로 당해구청장의 권한으로 이양함을 요함.

9. 차량세에 대한 과세표준을 확립할 사

특별행정세에 대한 부과표준이 기장되어 있지아니하니 개선요망.

10. 검세부용지서식을 개선하여일목명료토록 개선을 요함.

여기에대해서감상을말씀드리면본청의세무과에3인의조사계라는것이있는데3인의과원이 있는것은대단히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적어도 35인을 두어가지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일년의 총계를 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야지 부과가 될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그런부과 자료를 획득한 것이없습니다. 다만 주먹구구식으로 작년에 13등이었으니 올해는 15등이 될것이다. 이런것은 추상적 수

자이에요. 호준조사라 할것같으면 집에 대한 구조라든지 생활 상태를 확실히 봐야할텐데 요새는 호준조사를 0이하에 호준 조사를 했지 0이상은 안했습니다. 여기에서 구태여 누구라고 말씀은 안합니다 마는 부지가 3천여평에 건물이 시가로 말하면 5천여만원 입니다. 그런데 가정에 하인이 얼마나 셋입니다. 그러면 그 하인의 월급을 적어도 만5천원은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5천원을 주면 그것만 해도 4만5천원이면 그생활수준이 어떻겠느냐 하는것을 잘 알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과는 얼마나 33등이 올시다. 33등이면 봉급자 세액박에 안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5십만원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33등을 만들어 놓고 그앞에 조고마한 하고방을 담배제작 좀 좋고서 하로하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36등을 과세한것이 있습니다. 이런것을 불적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세법 그것에만 협의적 해석을 했기때문에 수세를 못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장래에는 협의적해석은 고만두고 광의적 세법이라는 그 과세자체를 생각하셔서 적당한 과세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으며 또 아까 신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다행히 고액납세자에 대해서 체납률이 적었다는 것은 대단히 경하해 마지 않습니다 마는 그 반면에 고액납세자가 그렇게 체납을 안한 이유는 무엇이나 하면 세금이 얼마가안되니까 그런것입니다. 그리고 국세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국세에서 인정한 그 가격이 국세에 인정도 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를들면 회화동에 손원일씨가 33등인데 그앞에 담배가게를 조사했는데 37등인가 6등인가 그래요 그러면 그불평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직이라고 하더라도 생활상태를 기준으로 할것같으면 어디든지 거기에 대한 표준이 나오는 것입니

다. 적어도 그 집을보면 5십만원 이내가지고는 생활이 안 됩니다 그러던 5십만원으로 생각한 다 할것같으면 적어도 76등이나 77등이 확실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죽은 부과행정을 하지말고 산 부과행정을 해서 서울시 재정을 확립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 마는 0이하의 호준조사를 하지말고 음성세원을 포착해서 어디까지 든지 명명한 세원을 고려해 주셔야 납세자의 불평이라는 것이 없을줄 압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경제동태를 확실히 파악을 하여서 과세를 해주셨으면 누구든지 불평을 얘기하지 않을것입니다 다만 추상적으로 앞서서 누구누구 집은 어떻다 이것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과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이로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행득; 다음은 이갑수의원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갑수 의원; 금번사무감사중에 특히 재무위원회에서 본 차량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서울특별시청에 움지기고 있는 차대가 몇대냐 하는것을 말하면 약 30여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경찰국을 제하고 각경찰서에 위생관계로 나가있는외약 5할나가있고 나머지 본청에서 움지기고 있는것이 근 100대 그리고 각구청 사업장 혹은 병원등에 나가있는 차가 약50대 이러한 수자를 가지고 이차가 얼마만한 액수를 소비했으며 그 소비한 액수가 과연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소비되었느냐

하는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구청에 나가있는 차는 별문제라고 하더라도 본청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수가 당국에서 말하는바에 의하면 91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91대가 본청에 국한된 문

제인데 여기에는 승용차가 약 50대 나머지가 추력인데 약 50대 입니다.

그러면 현재 엄연히 승용차가 상당한 거액을 주고사들인 것이 3,4대가 놓고 있으니 이 원인이 무엇이나 고급관리들이 너무나 사치스럽게 좋은것을 타고 댕기면 안된다고 해서 자숙하는 의미에서 현재 안타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마는 엄연히 이차는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시기에 가서 한번어디에 갈려면머지않은 장래에 흐지부지 그차를 도루타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두어버렸어요. 이것을 그대로 두면 날이기면 갈수록 커다란 손해가 있다는것을 생각할때에 이것을 타지않는다면 매도처분해야 될것입니다. 여기에 91대가움작이고 있다는 것이 얼마만한 액수를 88년도 예산에서 소요했느냐 할것같으면 1억2천4백8만 8천백환이라는 커다란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1억2천여환이라고 할것같으면 말로는 쉽지만 대단히 커다란 액수인데 이것이 과연 시민을 위해서 올바르게 움직였느냐 하는것이 나는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주로 볼것같으면 인건비가 1천8백만환 수선비가 3천5백여만환 일반용품비라고해서 5천6백만환 급식비가 2천5백여만환 기타피복비니 집기니 약간 집어넣어서 1억2천만환 수자를 다 써버렸어요. 그러면 직접 당국의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현재 예산집행을 다 해버렸으니 어떻게 앞으로 움직일것이나 하니 오늘부터는 차수리를 통뭇합니다. 그러나 차는 현재 움직이어야 할 현실입니다. 그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거액의 수자가다 소비되었다는데 그 이면을 하나하나 들쳐 볼것같으면 나는 여기에 정당성을 띄었느냐 안띄었느냐 하는것을 의심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이 막대한 1억2천4백여만환 이라는 비용이 주로 일반용품비라고 해서 잔금이 소모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모되는것이 현재 서울시청에 출입업자가 네사람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네사람인데 반드시 경쟁입찰에 의해서 이 이용품을 구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마는 대부분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모순이 많습니다. 이것은 시재정면에 커다란 암을 기저오는 것이예요. 또한 시민이 낸 세금을 좀먹는 뜻의 하나라고 확실히 규정짓고 심읍니다. 이 수의계약제도가 있기때문에 여기에는 부정이 허다하게 많다는 것을 확실히 지적하고 심읍니다. 네개업자가 차량에 대한 수리 기타일반 용품을 구입하는데 세개업자는 불과 30 「퍼-센트」 밖에 안되는 것을 기지고 흐지부지하고 있으니 그러던 일개업자가 주로 금액의 7할이라는 것을 보급하여 수리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자상으로 나타난 사실의 실체를 조사했습니다. 본의원은 다만 본청에만 조사한게 아니라 실지 업자에게 가서 장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규명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현재 도로포장공사자체가 어느 업자에게 7백5십만원에 주었다는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5백만원은 어디로 들어갔느냐 이것은 여기에 이득권을 가졌다고 하나 이것은 고위층이나 직접 관계하는 분들이 여기에 좌우된다는 것을 부인못하시리라 믿읍니다. 이러한 수의계약에 맹점이 있기때문에 오늘날 서울시의 현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앞으로 시정해 나가지 않는다면 오늘날의 사무감사라는 것은 아무 효과를 가져올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물론 우리들이 적어도 시민의 대변자라고 해서 그릇된 점을 시정해 주리라고 믿고 우리들을 선출해준 시민들이 앞으로 시행정면이 어느정도 나지리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이런것을 이자리에서 지적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당국에서

도 앞으로는 한가지한가지 날이 갈수록 시정하는 점이 있어야만이 시민의 기대에 어그러짐이 없이 이런점이 그대로 존속된다고 할것같으면 우리 시의원 47명은 성명 자체를 의심 안할수 없는것이고 서울시민은 날이가면갈수록 생활고에 빠지게 될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나는 이런점을 시정해 주실 것을 믿어마지 않습니다.

이 본청에 91대의 차량이 그만한 커다란 액수를 소비시켰다는 것이 현재 백퍼-센트를 소비했다고 하는 이런 현실을 볼때 그외에 있는 구청 사업장에 나가 있는걸 종합해서 볼때 그외에 있는 구청 사업장에 나가있는걸 종합해서 볼때 적어도 2억이상의 수자가 자동차자체가 먹어버렸다고 규정짓고 싶어요. 앞으로 이런 백6십만 시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시청 자체에서 이런 거대한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이면에는 반듯이 이 이상의 시민에게 커다란 복리를 주지않으면 안되겠다는 견지에서 집행부에서 일해주시기를 부탁하는 나머지 경과를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부의장 이행득; 다음 문교위원회 소관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김준식의원으로 부터 보고하겠습니다.

○김준식 의원; 저의 주관사무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 한테 프린트가 있는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한 교육기관은 시교육국및관하 교육행정사무를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감사기간은 4289년10월30부터 11월12일까지 14일간 했습니다. 감사반을 편성하는것은 2개반으로 편성해서 반장에 김준식 제1분과에 장의순 정태희 최종욱 제2분과에 박명준 김제윤 김재광의원 넷째로 감사순서에 의해서는 첫째 시교육국 둘째로 제1분과에서 학무과 제2분과에서 문화과 그다음 학사행정과는 제1,2분과가 합해서 감사를 했습니

다. 그다음에 각구청으로 나가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는 제1분과에서 말고 제2분과는 서대문구 용산구 마포구 영등포을 맡았으며 보고서에 기재된바와 같이 각학교를 분담해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전에 문교위원회에서 몇가지의 간단한 소감을 말씀들이 겠습니다. 교육이라함은 국민된자 누구를 막론하고 중대한 관련을 갖었음으로 무엇보다도 중차대하면서도 한편 소홀히 여기기 쉬운 것입니다. 조국해방과 아울러 식민지교육은 민주교육으로 형태를 바꾸게 되어 비약발전을 보아 구걸을 하면서도 공부를 시켜야 겠다는 부형의 열과 학생들의 불타는 향학열은 드디어 교육의 왕국으로 굳림하게 만들어 초등교육은 물론 중고등대학의 급격적 발전은 전세계 자랑할만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교육자치제가 발족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사업에 관한건을 감사하게 함에 제하여 책임이 무거움을 알게 됩니다. 교육자치제구현에 필요한 자료를 구해서 세칭 말성많은 구역사회를 명랑하게 육성시켜야 겠다는 의도하에서 감사를 하게된 것입니다. 전역에 분산되어 있는 88개의 국민학교를 비롯하여 94개의 중학교 78개의 고등학교 15개의 기술학교 46개의 야간학교등은 물론 공민학교 유치원 사설강습소 학원 학술강습회 문화사업 학술부문에 이르기까지 허다한 것을 전반에 걸쳐서 감사한 다른것은 불가함으로 각구별로 학교를 선택하여 감사를 함으로서 시정점을 발견코저 했습니다. 감사대상으로 선출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미안한 감을 금치 못하는 동시에 감사에 응한 교육기관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감사에 편의를 준데 대해서 상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공통된 사실로서 감사대상해당유무를 막론하고 자기의 소관으로 생각하고

시중에 일관하여 진보의 일보가 된다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자이 보고서를 올립니다. 보고서에 누락 사항은 최종육의원과
장의순의원 구두로서 보고하겠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제1먼저 교육국부터 하겠습니다.

5. 감사결과시정사항

1 교육국관계

1 학무과

ㄱ. 89년도 장학방침인 3대목표를 기별로 구분하여 특
히 기간만은 1개월목표에만 총역량을 집중시켜 학교나 감사
관청이나 혼연일체가 되어 성과를 올리도록함이 효과상으로
보아 일률적장학보다 나을것이니 차후방침수립에 일고를 요
함.

ㄴ. 학사시찰지도에 있어 도심중심보다 주변중심으로
노력을 경주토록 할것.

초등계에서 제출한 기록에 의하면 1년중 1회도 시찰
치 않은 학교가 있음은 심히 유감된바임.

종로의매동국민학교

성북구의숭덕 장위 승례 우이등 4개국민학교

서대문구의북성국민학교

마포구의한서국민학교

영등포구의노량진국민학교

이상8개교는 시학무과로서 학교운영상 애로가 많은것
임 년내로 빠짐없이 시찰하여 지도할것.

ㄷ. 국내각과는 횡적연락을 긴밀이 취하여 학무행정의
원활을 기할것.

초등중고등학교를 막론하고 학사시찰상 발견된 애로조
치사항이라하여 학사행정과와 협의한 사실을 발견치 못하였

음.

학무행정이 주가 되어 여기 알맞는 학사행정이 되어야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주객이 전도된 역할을 하고있음 조속히 시정할것.

ㄹ. 인사취급에 있어서는 4288년도국민학교 인사조치 기본방침을세밀하게 작성하여 원칙에 입각한 인사취급에 노력은 하였으나 계획적인 근거가 없기때문에 기본방침은 공문 서화하고 인사의 원활을 결하고 있음이 허다함 조속한 시일 내에 상세한 과학적이며 계획적인 기초를 산출하여 합법적인 사 조치를 바람.

예 성동구경동국민학교는 교장을 위시하여 사고자집결 소로 되어 자타가 공인하고 있음은 민주교육발전에 일대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2 학사행정과

ㄱ. 학교증축신설등 시설면에 있어서는 사전에 학무과의 의견을 심분참작하여 완급을 고려하고 각구균등하게 시설을 하도록 노력할것 과거는 학사행정과일방적인 처사가 많았음은 유감임. 차후는 학무과의견을 절대존중할 것이며 학무과의 의견없는 시설은 일절 삼갈것.

ㄴ. 공문서취급을 신속히 하여 사무의 원활을 기할것 상급관청에 상신공문중 반년이 되도록 미결된것이 있음은 유감임.

재차상신하여 조속처리하도록 할것.

하급관청에 지시공문은 기일엄수정리할것이며 지연될 때에는 독촉장발부하여 신속처리할것.

ㄷ. 곤셀25동을 조속히 운반하여 부족한 교사보충에 협력할것.

상기곤셀25동은 9월7일부로 ◎913,756 22,843,900
을 외자청에 지불하고 2주일내로 현품인수케 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상금까지 미수령함은 근무태만으로 밖에 볼수없음. 조
운으로 하여금 조속운반인수하여 각학교에 인도하도록 할것.

AFAK물자운반료 지불액을 추가계상하여 실비제공할
것.

제1차영달액은 88년도 운반비예산 2,889,000 중
2,861,600H지불되었음을 확인하였으나 원래예산상 부족으로
추가경정예산수립하여 실비지불하도록 할것.

ㄱ. AFAK물자수입 보고서 접수처리를 신속히할것 해
물자를 수령하는 학교가 21개교 10개교만이 일부분에 한하여
수령보고를 제출하였을뿐 기외는 아직 보고가 없이 그대로
있음은 물자취급에 있어서 소홀한 관념이 있어 등한시하게
됨으로 기시즉시로 보고서접수 처리하도록 할것.

ㄴ. AFAK물자관수에 만전을 기할것

AFAK 물자로 반입된 세멘트장기보관이 불가능함으
로 세멘벽돌이라도 속히 만들지 않으면 기기능을 상실할 우
려가 있으니 조속처리함을 요망함.

ㄷ. 무인가학교 폐쇄에 대하여 조속처리할것.

명신학원 재단만 인가를 득하고 학교인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중고등학교를 운영함은 부당함.

단국학원 중학교만 인가를 받고 고등학교까지 운영하
고 있음은 부당함.

문리학원 중학교인가로 고교경영은 부당함.

영신학원 우와동일함.

ㅇ. 서울특별시 장학회운영을 확충실시토록 할것.

서울특별시 장학회는 4282년4,8일설립등기를하고 별

로 활용도없이 지우금일하였음.

지금까지 혜택을 받은 학생은 서울중학운영남군이 1개월에 2만환씩 4개월분 8만환을 받았을뿐4289년11월1일현재잔금11,330,006으로 되어있음. 적어도 수도서울특별시 장학금인 만큼 좀더 활약이용함을 요망함.

ㄷ. 초등학교영선비 예산도 각학교별로 계상하도록할 것.

89년도예산에 있어서 중고등학교는 학교별로 책정 되어있고 초등학교는 일괄편성되어 있음으로 학교책임자들이 불평불만이 많음.

차후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사전 각학교의 실정을 조사하여 교별로 계상토록 할것.

수용비 예산지출에 있어서 학교단위로 기본액을 결정하고 기타학교별로 할당하도록 할것.

89년도 수용비 지불에 있어 일괄적으로 학교단위로 편성함으로서 큰학교는 기백만환에 대하여 적은 학교는 불과 10만환내외에 지내지 못함으로 실지학교 운영상 애로가 허다함.

ㄹ. 중고등교육비 특별회계에 전입될 일반회계를 급속히 전입시키도록 노력하여 회계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할것.

.....

(참조)

인건비내역

(뒤에 실음)

.....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고보조금이 조속히 입금되지않는 반면 영선비 인건비 지출이 많은 관계로 학교당국으로서

는 수납금에 비하여 영달금이 막소케됨.

학교경리사무 감독철저에 관한건

금반시정감사에 나타난 학교납부금 종류 다음과 같음.

사친회비 기성회비 (시설비포함)

학도호국단비 수업료 연구비등은 공식징수 중도전입생 자축기부금 용지대금 운동회및학예회비 기념행사비 서적 판매대등은 비공식징수

이상 각종의 금액을 징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통장 혼용 증빙서부비 과목유용 공금유용 장부부비 가불등 회계법 규를 무시한 운영을 하고있는데 허다함.

시당국으로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관계사무담당자를 소집하여 장부정리에대한강습을 실시하여 학교경리사무 취급의 ○일을 기함을 물론 수시출장 지도감독함을 요망함.

포. 오물제거료 최소에 대하여 경찰국에 교섭하도록할 것.

시내각학교 공히 변소오물제거료 예산이 막대함으로 시경과 연락하여 학교관계만은 전연안 받든가 특히 할인하던가 하여 편의를 도모하도록 할것.

ㅎ. 도시계획면에 학교위치선정케 할것.

건설국과 연락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의 장래를 고려하여 국민학교교지 선정을 도시계획면에 구현시키 도록할것.

ㄱ. 예산취급은 현실에 맞도록 노력할것.

4289년9월12일부로 영달한 연료비급수용비학교비 35,500을 4289년5월초에 각구청에서 보고한 4289년도 학급 예정수에 비례하여 할당한 관계로 현학급수 4289.9.3일현재 2,935학급(학사행정과조사수자)에 대하여 329학급을 초과한 3,264학급분을 지급하였음.

그것도 각구균형을 잃었을뿐만 아니라 적은 학교는 곤란한 처지임. 현학급수에 맞도록 지불하였으면 $329 \times 35500 = 11679500$ -이 절약되었고 불평도 없을것을 현실을 무시한 관계로 이런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재인식하여야 함.

ㄴ. 학교공사를 해당교장으로 하여금 감독권을 갖도록 할것.

각학교시설에 관한 공사의 대소를 막론하고 해당교장으로 하여금 사양서에 의한 공사감독을 하게함으로서 학교에 요구에 맞는 공사를 할수있다고 사료됨으로 시정을 요함.

ㄷ. 각급학교를 각구별로 균등적정 배치할것.

각구에인구및 행정사정을 고려하여 국민학교는 물론 남녀중고교 실업중고교를 균등하게 배치하여 교육상기회균등을 갖도록 할것.

ㄹ. 공립중고등학교 (실업포함)에 야간부를 병설하도록 할것.

소위일류 중고교라고 세칭하는 경기 서울 경북 용산 경동등 인문계는 물론 경동공업 성동공업 등 실업학교에 야간부를 병설함으로서 무산학동 특히 직업을 가진 학동들에게 교육의 기회균등을 줌으로서 학○을 대상하여 모리행위를 감행하는 불순한 시설을 미연에 제거시킬수 있을것임.

3. 문화과

ㄱ. 남대문 도서관에 있는 부속건물중 현재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즉시반환 조치할것. 수도서울특별시에 국립도서관을 위시하여 남대문과 종로도서관등 불과 3개소 밖에는 현실정에 비추어 향학열에 불타는 수많은 남녀학도들은 아침일직부터 도서열람을 위하여 열을 지어 앞을 다투고 있

음을 자타가 공인하는 바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소유인 부속건물을 일개인이 사용함으로써 학도들의 열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하고있음 즉시로 좌의 건물을 반환조치하도록 요망함.

학도타임스사(윤홍균) 한희협회(조의설) 국제어학회(조의설) 한독협회(조의설) 타이프학원(고윤중)A,L,I,(한세회)

ㄴ. 서울운동장내 부속건물중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즉시 반환조치할것.

운동장내 건물에 관계없는 사람들이 들어있음은 운동장 운영의 본래의 목적에 어긋남으로 즉시 반환하여 사명완수에 노력할것.

시립극장운영에 관하여

시공관이 시립극장으로 명칭이 바뀌어짐에 따라 시립극장운영에 대한 S O P 가 결정되어서 그S,O,P에 의거하여 운영되어야 할것임.

1 현재시립극장은 극장으로서 기능을 발휘하든가 또는 공공물로서 기능을 발휘하든가 그 성격이 결정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여야 할것임.

2 시립극장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에 대한 생활대책을 시에서 부담하든가 확고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것임.

3 시립극장으로서의 확고한 S,O,P, 가 결정되지 않기때문에 현재 영사기2대(6백만원에구입) 가 그대로 방치되고 그 기능을 발휘치 못하고 있음. 시는 즉시로 시립극장 운영에 대한 S,O,P,를 결정하여 정상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할것임.

2 국민학교

(1)사친회비운영에 관하여

ㄱ. 세입세출부,금전출납부,비목별장부,증빙서등 관계장부를 완비할것.

ㄴ. 당일입금된 현금은 반드시 당일통장에 입금시킬것.

ㄷ. 수입금과 교직원 후생비와 상살제도를 전폐할것.

ㄹ. 사친회비 예금통장을 단일화할것.

ㅁ. 사친회비를 유용치 말것.

ㅂ. 사친회비 가불제를 없앨것.

ㅅ. 예산과목을 ○용하지 말것.

ㅇ. 예산비 지출을 엄금할것.

ㅈ. 비목에 적합하게 지출할것.

ㅊ. 예산액초과지출이 필요시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수립후 지출할것.

ㅋ. 사친회비관계증빙서류는 영달금 관계서류 이상으로 정비할것.

(2)기성회비에 관하여

ㄱ. 사친회비와 혼합하여 사용치 말것.

ㄴ. 기성회비예금 통장을 단일화 할것.

(3)연구비에관하여

ㄱ. 연구비 예금통장을 단일화할것.

ㄴ. 교육연구에 한하여 사용할것.

ㄷ. 사친회비와 혼용말것.

(4)결식아동구호물자에 관하여

ㄱ. 유니캡물자는 결식아동에 한하여 구호대책을 강구할것.

ㄴ.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수불현황을 명백히 할것.

(5)AFAK 물자취급에 관하여

ㄱ. AFAK 원조물자재는 현품인수차제로 수시 교육국

에 보고할것.

ㄴ. 물자보관에 유의하여 사고미연 방지에 노력할것.

(6)잡부금징수에 관하여

ㄱ. 중도입학자에 대하여 기부금 특별찬조금을 징수치
말것.

ㄴ. 각학년별에 해당하는 용지대를 징수치 말것.

ㄷ. 운동회 학예회 또는 기념행사등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치 말것.

관계당국에서 인정된 이외에 서류판매를 엄금할것.

3 중고등학교

(1)수업료징수에관하여

ㄱ. 수업료 예금은 반드시 시금고를 이용할것.

ㄴ. 수업료는 학교보관 기간을 단축하고 즉시 시에납부
할것.

(2)사친회비운영에 관하여

ㄱ. 예산액 초과지출을 엄금할것.

ㄴ. 예산액 부족시는 추가경정 예산을 수립후 지불할
것.

ㄷ. 일반적으로 예비비와 잡비예산이 타비목보다 비중
이 과다함으로 차기예산 편성상 고려할것.

ㄹ. 가불을 엄금하고 기가불분을 조속히 회수청산할것.

(3)잡부금징수에 관하여

ㄱ. 중도전입자에게 자축기부금 특별찬조금등으로 다대
한 금액을 징수하는 예허다함.

이는 법상부당한 처사임으로 차후는 엄금할것.

ㄴ. 기념식비용운동회 학예회비용등으로 잡부금을 징수
하고 있음은 부당한 처사임으로 차후는 엄금할것.

이상 여러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요는 어디까지나 아동을 위한 학교로 되지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국으로서 이상 말씀들인것을 관계각기관에서는 조속히 시정해서 민주교육 행정에 일고가 되면 다행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이행득; 문교에 관한 시립극장에 대해서 보충감사 보고를 김제윤의원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김제윤 의원; 제가 시립극장 문제를 미리 말씀드리기전에 이미 문교관계에 있어서는 의원장및 간사의 보고가 있었읍니다. 단 대단히 유감된 말씀을 표시할려고 올라오는 이유는 이런 중대한 보고를 하는데도 관계국장은 물론이려니와 과장이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대문 도서관을 방치함으로 불법으로 그건물에 거주하고 있는것을 방임하고 있는 근원이 되는바 반듯이 당해과장이 나와야 겠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왔음은 유감에요. 질의전에는 책임있는 답변을 할수 있도록 해 놓시기를 집행부에서 통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극장 문제에 대해서는 관장되시는 백수성씨를 만나서 얘기하기를 「지금 감사하는 이기회가 당신으로서는 가장 좋은 기회요 왜그렇냐 하면 당신에 대한 의혹이 많아 내막적으로 많은 착복을 하고 있다는 말이 들리고 있어 시민들의 의혹을 사고있으니 이 기회에 밝혀라」 했습니다. 이관장의 말씀이 「서슴치 않고 말씀드리지요」 하더니 그 말씀야 여러가지 영화를……이것을 실은 여기에서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제가 절대로 시립극장의 장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한다면 할상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용기에 경탄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시립극장이

극장자체의 기능을 발휘 못하는 결과가 자체유지를 해나가는 데 여기서 수입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부담을 경감할수 있다 말씀에요. 실지면에 지금 나열이 되고있는 시공관 운영위원회 라고해서 일반에서 몇명 집행부에서 몇명이 되었으나 이것을 더 연구를 하지 않는한 필요가 없다 말씀에요. 이정도로 지속을 할테면 다른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것을 통렬히 느꼈읍니다. 시자체에서는 말야 부민관같은 것도말야 찾아할수가 있다 말야 명목상으로 부민관을 수리하고 있다는 말씀에요. 집행부로 하여금 이런 사례를 충분히 연구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행득; 6분과에 대한 감사보고는 이만 마치고 내일은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보고는 이상 마친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안전하나 있는것 마저합시다.」 하는이 있음.)

의사일정에 상정되어 있는 토석채취허가 취소시정요구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하십시오.

4. 토석채취허가취소시정에대한청원서처리에관한건

○김경원 의원; 본건에 대해서 우리산업위원회에서 현지를 실지답사했고 따라서 관계자에 대한 실지 여러가지를 조사한 결과를 오늘 이자리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하고 우리의 결의에 대한것을 여러분이 잘 검토해서 해주십사 하는것이 옳시다.

단기4289년10월10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북구돈암동357의1 유동훈씨 청원건을 검토한 결과 여좌히 결의했습니다.

서의제 호

단기4289년11월23일

산업위원회 김 규 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청원서심의부탁의건

단기4289년10월15일자로 서울특별시성북구돈암동357의1호 유동훈씨 청원건 기내용을 검토한 결과 경미한 안전으로 볼수없고 본회의에 상정처리함이 가한줄 본위원회에서 결의 하였습니다. 자이보고하나이다. 이점에 있어서 우리가 실지답 사한 결과를 제가 여러분께 간단히 보고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의원7인이 돈암동 채석장을 나가보았습니다. 그근방에 오래살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실제현재 거기 살고있는 사람들 한테 물어보니 유동훈이란사람이 4282년도에 거기 42동이라는 이런집을 자기돈을 4천여만원을 들여서 철 거를 시키고 따라서 자동차와 마차가 드나들수 있도록 완전 한 설비를 하고 있는걸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불 적에 사실 틀림없이 유동훈이란 사람이 이와같이 거대한 돈을 들여서 집을 42동이나 적당한 장소로 이전케하고 따라서 마차와 자동차가 완전히 채석장으로 들어가겠끔 이런 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엇재 이것을 취소했는가 하는것을 신중히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채석장소유를 샀다는 박만수 란 양반한테 물어보니 자기가 이 소유를 샀기 때문에 자기가 채석장허가를 맡기위해서 샀다는 것이 옳시다. 그러면 우리가 불 적에 이채석장이 과거에 틀림없이 유동훈이란 사람이 그 와같이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완전한 설비를 한 채석장을 6·25사변이라는 이런 사변에 부득이 허가기한을 다 자기가 작업을 못하고 1·4후퇴를 해서 다시 들어와서 작업을 시작할 라고 하는 찰나에 강만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토석장소유를

사다고 해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에 대한 법적 연구를 우리 의원들은 해보았습니다. 산림령 제2조에 의해서 그 허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토지를 산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 토석장을 집행부로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산림령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럼 왜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이런 일을 했는가 그래서 다시 여러가지 각도로서 우리가 조사해본 결과 그당시에 산업국장으로 계신 현재 내무국장 이양반당시에 이런일이 버러졌기때문에 여러가지로 우리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합법성이 아니고 비합법성이라는 것을 어느정도 우리가 짐작했기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치적 배경이나 혹은 유동훈이란 사람보다 좀 권력이 있는 사람의 압력이 아닌가 여러가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동훈이란 사람한테 실지내용을 다시 물어보니 현재내무국장으로 계신 이양반이 4288년9월달인것 같습니다. 유동훈이와 현재 그토지를 사다는 강만수 그당시에 있던 과장계장을 국장실로 집합시켜 놓고 채석장은 당신하고 강만수한테 두사람에게 허가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그래는가 여기서 틀림없이 이문제는 무엇인가 유동훈보다 권리가 있는 사람이 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 근래에 와서는 허가를 취소했다 허가를 취소한 조건은 무엇이나.

풍치보안림이라는 이러한 조건하에 취소를 했습니다. 보안림이라는 것은 안암동에 있는 그채석장만 보안림이나 이러한 점도 우리가 검토했습니다.

알고보니 서울주변에 있는 채석장은 전부가 보안림이올시다. 그러면 그 채석장은 오늘 이 시간까지도 완전히 움지기고

있는데 어째서 이 채석장만은 보안림이라는 이러한 조건하에 취소가 되었느냐 여기에 우리 위원회로서는 의심안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점에 있어서 6·25사변때문에 이 채석장을 옮기지 못했으니까 다시 년수만은 통산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삼림시행 현칙 제4조 제5조에 의해서 당연히 존속할수 있는것이 아닌가 법적 해석으로 불적에 이런점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유동훈이 그 장본인인 청원인 말이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집행부로서 우리 대한민국 법률 고문 기관인 법제처로 질의를 했든것입니다.

그 질의에 결과를 보면은 단연코 6·25사변 이후 허가중인 것은 당연히 유동훈에게 조속히 해 주지않으면 안된다는 이런 해명서가 나와있다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채석장만에 한해서 보안림이라는 이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취소를 했다 이것은 우리가 집행부를 나쁘다 하고싶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는 6법이외에 8법이 있다는등 여러가지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이 취소문제에 있어서 채석장이 산간벽지이기 때문에 산간벽지법을 적용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집행부로서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으로서 이 채석장에 있어서는 법제처의 해석을 보드라도 단연코 유동훈이가 6·25사변으로 말미암아서 채석장을 경영하지 못했다는 이 허가기간의 공간을 단연코 집행부로서 조속해결시켜주어서 작업을 시키지않으면안된다는것을 나는 이자리에서 말씀하고싶습니다.

이상으로서 말씀을 끝이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이 있음)

○홍순우 의원; 제가 본건에 대해서 발언을 하게된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일언할것 같으면 이러한 문제는 비단 성북구에 한한 유동훈씨의 한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사례가 지금 허다하리라고 생각하는 바이며 따라서 본위원회로서도 이와 비슷한 청원이 수건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김경원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중복을 피하고자 합니다만은 대강 거기대해서 제가 아는 한도까지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여기 청원서에도 있는바와 마찬가지로 본건 토석채취 허가는 적어도 허가신청자인 유동훈씨는 채석장부근인 서울성북구 안암동 산10번지 1호 5호 7호 부근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 42동을 근2백간을 매간당 1만환식에 매수해서 철거를 시켰든 것입니다.

그철거시킨 것은 그채석을 하자고 하니 그주택들이 많기때문에 그것을 철거시켰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인당 15평대지를 알시하여서 타처로 이전케 하고 다시 삼림 소유자인 이병만씨에게 매월 토지 사용료로서 삼만환식은 지불키로 하고 그 채석금량 1만9천2백4십2입방미를 채취한 다음에 그 현상대로 반환을 받기로 하는 조건하에 4282년12월25일자로 서울특별시 당국으로 부터 허가받엿든 것입니다. 위선 3개년을 이 기한으로 주는 동시에 이 기한내에 만일 채석이 완료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전량채취완료시까지 수시로 갱신연장키로 한것인데 그후에 허가에 의해서 청원인은 사천여만환을 투입하여 토석채취에 착수진행중 허가일로 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서 6·25동란과 거듭한 1·4 후퇴에 인하여 토석 채취가 중

단되었든 것입니다.

청원인은 86년 수복후 근20만환의 돈을 또한 다시 투입해서 재차 채석장업에 착수하려 했습니다 만은 4286년9월24일 강만수씨는 본건 임야를 근 20만환에 매수하였다고 칭하고 시측과 강만수씨는 채석장업을…… 채석을 방해했습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단기4286년12월경 청원인은 서울특별시 청원서를 제출하였든바 시당국에서는 4287년 유동훈씨에게 별지 제1호와 여히 채석허가를 보류한다는 통지를 발송했습니다.

허가된 사실이 없을뿐만 아니라 본건 임야는 풍치보안림이 아니라고 주장하기에 청원인이 4287년2월경에 강만수에 대하여 서울시로 부터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과 또한 본건 임야가 사유림이 아니고 풍치보안림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서 4287년9월경 서울특별시 당국에 토석채취허가 기간에 관한 질의서를 제출하였든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당국으로서는 그럴것 같으면 법제처에 질의해서 이것을 결정을 하기로 했든것입니다.

그러면 법제처에서는 그 통고가 별지뒤에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해명이 났든것입니다.

토석채취허가 기간에 관한 질의의 건

4287년 9월1일자로 신청한 수제의 건 법제처에 질의한바 그 해명이 좌기와 여하옵기 양지하시알

기

1. 귀질의제1기에 대하여

3년간의 기간을 정하여 채석허가를 하였든 것이 6·25사변과 이에 따르는 계엄지구 한강도강의 금지등 사유로 채석작업이 불가능한 것은 현저한 불가항력임으로중단기간은 허

가기간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함.

차불가항력에 기인한 불이익을 허가받은 자에게 귀하게 함은 이론상으로는나 실제상으로는나 부당한 까닭임.

2. 귀질의 제2에 대하여서는

삼림령 제2조및 삼림령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서 새로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서도 유효한것임.

이러한 법제처의 해명이 서울시당국에 내려왔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삼림령 제2조라고 하는것은 무엇이나 할것 같으면

제2조 보안림에 있어서는 지방장관의 허가를 수치 않고서는 삼림의 수입이 아닌 목축의 벌채 또는 개간을 하거나 낙엽절지토석 수근 초근의 채취 또는 채굴을 하거나 또는 방화를 할수 없음.

하는것이 여기에 기재되어 있고 동시행령 규칙 제5조를 볼것 같으면

제5조 삼림령 또는 본령의 규정에 의하여 한 수속 기타 행위는 삼림 토지 또는 임목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유함 이러한 것을 법제처에서 얘기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후에 현재 내무국장으로 계신 당시 산업국장은 그러면 이 문제를 강만수씨와 유동훈씨 그 양인에게 이것을 허가해 주는것이 어떠냐 즉 다시 말하면 한 장소에다 두사람을 두어가지고 그 장소에서 한장소에서 두사람이 각각 이것을 하게 해주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아마 유동훈씨는 또한 그것을 拒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시당국의 처사가 잘못되었다고 하는것을 잠깐

지적하겠는데 본건채석허가 기간 3개년중에서 6·25사변으로 사실상 채석이 불가능한 기간을 연장하여 줌이 타당하다는 법제처의 해명통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기한을 연장 해주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둘째로 말할것 같으면 본건 토석채취행정 처분이 어째서 서울시 당국은 강만수씨라고 하는사람을 참여케 한 이유 그것을 또하나 묻고 싶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설사 전소유자 이병만씨에게서 그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허가갱신 하기전에 강만수씨는 그소유권에 대해서 삼림령 제2조와 동4조 5조에 대항할수 있는지 또한 청원인의 채석허가가 처리도 되기 전에 법제처의 해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4288년도 6월중 순경 강만수씨에게 채석허가를 하여 주겠다고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은 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별지에 붙은것과 마찬가지로

단기4288년도 8월18일

서울특별시장 김 태 선

허가취소에 관한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보면

사유보안림내 토석채취 허가 연기신청의 건

귀하로 부터 출원한 수제의 건에 관하여는 도시 미관상 및 풍치유지상 지장이 유함으로 종전 허가는 취소하오니 차를 양지하시얏.

만일 이렇게 된다고 할것같으면 이것이 풍치보안림인줄 알고서 서울특별시 에서는 허가를 내준 이상 만일 이 허가를 취소한다고 할적에는 전보다도 더 큰 즉 말하자면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이 허가가 만부득이 취소 안된다면 안된다는 이러한 사항이 첨부했어야만 될것입니다. 그렇지 않어요?

이것이 보안림인줄 알고서…… 또한 그것이 도시미관상이라고 하는 이유로서 취소했다는 것은 알수없는 배고 또한 다시 한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것은 고만 둔다고 하더라도 풍치 보안림 이면 어디까지든지 그 공익상 이유로 취소가 되었지 강만수 유동훈씨 그 양인이 한 장소에서 채석을 한다고 하면 허가를 해주겠다고 이유를붙였든 것입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모든것을 종합해 볼적에 서울시에서는 하등 이 본건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서 제 의견을 말씀 들었습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김규원 의원; 장시간 동안 여러분 피곤하실터인데 더 말씀을 들이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산업분과위원회에서 경미한 안건이 못되기 때문에 본회의에 내걸고 여러분의 고견으로 결정 짓도록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산업분과위원회에서 반듯이 어떠한 의견을 첨부 해가지고 낸것은 아니올시다. 그렇게 미리 양해해 주시고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들이면은 유동훈씨라고 하는이가 어긋하게 취소당한 것은 사실인데 여태까지 설명하신중에 지금 토지를 샀다고 하는분과 먼저 허가를 받았다가 사변통에 그것의 설비를 해놓고 운영을 못하고 나중에 어긋하게 취소를 당했다는 분과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심에서는 토지 샀다는 사람이 이겼고 2심에서는 허가 받았든 분이 이겼어요. 이기고 또 토지샀다고 하는 분이 철회했다고 합니다. 고등법원에다가 상소를 했지만 다시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없다고해서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아즉 귀결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여

태까지 김경원의원 이라든지 공순우 의원이라든지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도 여러분도 대강 다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것입니다.

그 유동훈씨라고 하는분에게 우리가 도의적으로 그분에게 동정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유동훈씨한테 일단 취소했던 것을 다시 허가하여 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집행부에게 건의를 해서 그것이 과연 실행을 할수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했길래 저간에 산업분과위원회의 책임을 맡은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두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타협 화해를 하도록 무수히 근접해 보았습니다 만든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것이 성립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같어서는 우리가 여기서 권고결의를 해서 어느 정도 그것이 우리 의회의 참 위신을 세울수가 있나 이점을 한번 생각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림과장이 이자리에 나와 계시니 그 실정을 한번 간단히 말씀들어 보는 것이 어때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표결에 붙입시다.

지금 산업위원회에서 내놓은 것은 경미한 안건이 못되기 때문에 내놓은 것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중히 생각할것은 산업국장이 지금 안계시니 농림과장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때요.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좋으시다면 우리가 듣고서 표결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의장」 하는이 있음.)

김인기의원

여기에 대한 해명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단기4287년1월20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357의1

유 동 훈 귀하

진정서 제출의 건

단기4286년12월 일자로 제출한 진정서에 관하여는 당사간의 소송의 정식판결이 유할시 까지 해 토석채취에 대한 허가를 보류키로 결정하였아옵기 자이통지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규원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채석허가와 토지에 관한 분쟁과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엄연히 고등법원에 올라가 있는 이 문제가 시장 명의로 결재중에 있다고 해서 시장 명의로서 취소가 된다는 이러한 일방적인 면에서 집행은 했기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들이는 것입니다.

어째서 여기에 일방적인 편파를 해서 고소중에 있는 허가를 없애야 된다는 생각에서 취소했으니까 이것은 다시 부활을 시키자는 것이 가장 응당하다는 것이 나의 주장입니다.

그럼으로서 주무국장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신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청취해 가지고 의견을 득한 다음에 가결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 주무국장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홍순우 의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경원의원께서 말씀이 본건은 요쟁중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가를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해서 ○쟁중에 있다는 말씀

을 하셨습니다. 허가를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해서 계쟁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하고 틀립니다.

유동훈씨가 다시 채취할라고 하니까 강만수가 방해하니까 그것때문에 소송을 했던것입니다.

서울특별시가 허가를 다시하느냐 안하느냐 하는문제와는 다른것입니다. 이문제를 확실히 구별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동석 의원; 김인기위원의 동의에 첨부하면서 이런 말씀 첨부하고 시켜서 나왔습니다.

그 당시 주무국장이 지금 내무국장으로 와있고 답변은 현재 주무국장이 하게 되었으니 상세한 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내무국장의 답변을 듣고 현산업국장의 답변을 듣는것이 순서라고 보아서 김인기위원 동의에 재청하면서 첨가하겠습니다.

(「중소」 하는이 있음)

○부의장 이행득; 동의는 성립됐는데 지금 주무국장이 없으니까 내일로 이안건심의를 미는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을순 의원; 이제 주무국장이 산업국장인데 현재없고 내무국장박에 안계신데 나와서 답변해본 댕자 신통한 얘기 안나올 것입니다.

시간이 늦고 했으니까 내일 국장나와서 답변듣고서 심의하도록 하는것이 좋지않을까 생각됩니다. 내일 증언을 청취할것을 개의하겠습니다.

(「찬성요」 하는이 있음)

○부의장 이행득; 개의 성립되었습니다. 지금 주무국장이 출타하고 없기때문에 시간도 없고 해서 내일 아침에 주무국장이 오시면 그 증언을 청취하자는 개의입니다. 가라는 분 거수하세요.

(거수 표결)

김인기위원의 동의를 무섭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발표해 올리겠습니다. 43명중 개의에 가가 15명 미결입니다. 동의 역시 가가 15명 미결입니다.

○김제윤 의원; 미결이 되고 재토론을 할 과정이 되기때문에 본의원이 올라왔습니다 만은 주무국장을 불러다 질의를 하면 설명에 따라서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연장되었어서 우리가 이 시간까지 지연시킬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해서 또 한개의 안건을 통과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했기 때문에 원안에는 찬성을 합니다 만은 내일로 미룰것을 요청합니다.

○부의장 이행득; 다시 표결하겠습니다. 개의에 가하신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동의에 가라는 분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개의 재석 33명중 가 26 가결됐습니다.

개의 가결된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 50분 산회)
